

평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년월일 : 2005. 10.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함 (안 제2조, 3조)
- 나.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을 정함 (안 제4조 내지 제6조)
- 다.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내지 제9조)
- 라.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척사항 등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 실시(9. 1 ~ 9. 20)결과, 의견제출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되어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보건의료원장, 환경복지과장, 지역도시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평창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함께 한다.

②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 ①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